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1
----------	------

발의연월일 : 2024. 8. 6.

발 의 자 : 최보운 · 김승수 · 임이자
김성원 · 김 건 · 엄태영
윤영석 · 김선교 · 장동혁
김은혜 · 안상훈 · 박준태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

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애계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

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포용적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거주시설과 집단적 거주 형태의 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집단적 거주형태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거 전환지원”이란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27조의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

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성별, 연령, 장애정도, 의료적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모든 사회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다

른 사람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정책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보호자의 협력) 장애인의 보호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하 “지역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립 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인력의 교육·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광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따른 자립조사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5.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정착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
 6.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상황 평가
 7.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 지원정보 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8. 시·도지사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광역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상담 및 정보제공) ①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 및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립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제23조에 따른 단기 체험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대기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2.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거 공급 상황,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20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 대기 중인 장애인이 우선하여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시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자립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 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자립욕구조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③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하며, 제2항에 따라 자립욕구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장애특성

3. 신청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재산, 건강 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립 지원의 신청을 각

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이 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립육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립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등은 제1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이하 “자립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는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등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원 가능한 관련 급여와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방법 등
2.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지원계획은 해당 장애인의 자립 예정지역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

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내용, 변경·수정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자립 준비 지원) 시장등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 전환 관련 정보의 제공
2. 제23조의 단기 체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 연계
3. 그 밖에 원활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의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제9호까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
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8조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① 시장등은 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 제27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주택 등에서 장애인이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자립지원 상황 평가·보고) ①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

한 업무를 중앙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중앙통합지원센터, 광역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통합지원센터,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3조(벌칙) ①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의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제15조의 광역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과 제28조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